

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2년 4월 3일

○ 회부일자 : 2002년 4월 4일

3. 제안이유

- 주민감사청구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감사청구 주민 수를 대폭 낮추는 등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○ 감사청구 주민 수 조정

-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 수를

“전년도 12월 31일 현재 20세이상 주민총수의 1,000분의 1”을

⇒ “20세 이상 주민 300명”으로 함(제2조)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정부혁신추진위원회의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방안 및 행정자치부 권고안에 따라,

감사청구 주민수를 20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,

-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

시민단체가 제출한 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 개정의 청원을 집행부로 이송 중 조례의 개정에 검토 반영토록 하였는바, 이의 반영 여부와

감사청구 주민을 2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세의 기간계산 시점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붙임 :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